

地方財政關聯法令集

2014. 12

韓國地方財政共濟會
行政自治部



목 차

I. 지방재정

1. 지방재정법/시행령	11
2. 지방재정 하위규정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13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40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4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55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156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165
4. 지방교부세법/시행령/시행규칙	179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201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231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3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473
9.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577
10.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659

II. 지방교육재정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885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903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947

III. 국가재정

1. 국가재정법/시행령	953
2. 국가회계법/시행령	1021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035
4. 국고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051
5.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163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167
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1195

IV. 기 타

1. 대한민국 헌법	1207
2. 지방자치법/시행령	1225
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327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1333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381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391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397

I . 지방재정

1. 지방재정법/시행령
2. 지방재정 하위규정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4. 지방교부세법/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9.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10.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1. 지방재정법령

- ✧ 지방재정법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 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삭제 <2014.11.28.>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5조 삭제 〈2014.11.28.〉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	2014.11.19.>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1.28.>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09.7.30., 2013.3.23., 2014.11.19., 2014.11.28.>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 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	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7조의2 삭제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17조의2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	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8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제30조의2 삭제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0조의2 제30조의3(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30조의3 삭제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0조의3 제30조의4(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제30조의4 삭제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 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5.1.1.] 제30조의4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 2 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전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11.28.> ② 삭제 <2014.1.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12.1.31.]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1.17.] 제35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	2014.11.19.> 1.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회의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치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1.17.] [중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4.1.17.>]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본조신설 2014.1.17.]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7.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11.28.>]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27조의5제1항, 제27조의5제3항 [시행일 : 2015.1.1.] 제27조의5제2항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2015년까지: 100분의 15 2. 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18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감면액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본조신설 2012.1.31.]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11.28.>]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	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④ 시·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관할 시·군의 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⑤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시·군(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 삭제 <2014.11.28.>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제30조 삭제 <2014.5.28.> 4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2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3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4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5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2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6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3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4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5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6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7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9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10 제 3 장 예 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제 3 장 예 산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전문개정 2014.11.28.]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9.6.]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4.11.28.]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자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10.20.> 제44조 삭제 <2014.11.28.> 제45조 삭제 <2014.11.28.>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5.1.1.] 제33조제11항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4.11.28.]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8.]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	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정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직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 4 장 결 산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제 4 장 결 산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5.28.]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게 결산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11.28.]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62조의2(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 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회계 및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지방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51조에 따른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방회계기준 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4.11.28.] 제62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 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 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9.6.] 제 5 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4.5.28.]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금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삭제 <2014.11.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9.6.] [제목개정 2014.11.28.] 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4(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9.6.] [제목개정 2014.11.28.]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6.>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2011.9.6.> ④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6.> 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6., 2013.3.23., 2014.11.19.>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1.9.6.]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9조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제목개정 2014.11.28.] 제69조 삭제 <2014.11.28.> 제70조 삭제 <2014.11.28.> 제71조 삭제 <2014.11.28.> 제72조 삭제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 6 장 수 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6 장 수 입 제73조(세입조사결정) ① 징수관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납입의 고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75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7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80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8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제81조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려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83조(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과오납환금금의 이자) 법 제6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 장 지 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본조신설 2011.9.6.] 제 7 장 지 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9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제86조(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	지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삭제 <2014.11.28.>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① 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에 발한다. <개정 2014.11.28.> ④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개정 2014.11.28.> 제90조의2(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概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나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4조 삭제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74조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	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7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그 밖의 직의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다만,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0호(2009.1.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5호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2조(자금교부의 제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제57조 각 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제94조(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95조(임시일상경비출납원) ① 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94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선금급) ①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7조(개산금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98조(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읍·면·동의 출장소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4.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5. 화장장 6. 수원지관리사무소 7.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9.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0. 119구조대 11. 그 밖에 정원 3인 이내의 관서 제98조 삭제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98조 제99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 삭제 <2014.11.28.> [시행일 : 2015.1.1.] 제99조 제10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01조(보충적 경비) 법 제7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11. 체납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 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제세공과금 16.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17. 보험료 제 8 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8.> 1.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6.,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제 9 장 시 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103조의2(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0.12.20.] 제104조(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 장 채권과 채무 〈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 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검사하여야 한다. 제 9 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11.28.]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중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채무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 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87조의3 제 11 장 복 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	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을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가 있는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명령이 있는 때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 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 이득반환금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2 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	제 10 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28.>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출관을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그 밖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5조(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연도 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지방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7조(출납원의 망실보고)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13 장 보 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	제 11 장 보 칙 제140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법 제9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 및 지출원은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및 물품출납부를 비치하고, 현금 및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1조(금고가 비치할 장부)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산서의 제출) ①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월계표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97조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98조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7.4.5.]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중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11.28.>]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 칙 〈제12687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66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146조에서 이동 <2014.11.28.〉] 부 칙 〈제25781호, 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2. 지방재정하위규정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와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시·군·구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②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29.] [행정자치부령 제5호, 2014.11.2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 2 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4.7.30.]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30.]

제 3 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30.]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4.11.28.]

부 칙 <제5호, 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 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①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5.20.>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5.20.]

제 2 장 재무보고서

제7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④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⑤「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11.5.20.>

제 3 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재정상태보고서) ①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5.20.>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07.12.31.]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07.12.31.>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09.12.31.>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임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자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 4 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재정운영보고서)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 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 비배분비용: 임시적·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임시적·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일반수익을 뺀 것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에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0.]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보고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5.20.>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0.]

제30조(일반수익의 분류)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11.5.20.]

제31조 삭제 <2011.5.20.>

제32조 삭제 <2011.5.20.>

제33조 삭제 <2011.5.20.>

제34조 삭제 <2011.5.20.>

제 5 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찾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 6 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순자산변동보고서)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 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개정 2011.5.20.>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 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 7 장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결산총평) ①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③ 주요특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④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재무분석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41조(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2009.12.31.>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2의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2의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 회계실체(일반회계는 제외한다)의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제44조(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총평, 주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3.3.23., 2014.11.19.>

제 8 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미수세의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중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09.12.31.>

제59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61조(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 인정상태보고서일과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4.21.]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09.1.9., 2013.3.23., 2014.11.19.>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은 실·국·관·단·본부·과·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1.9.>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9.]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제 3 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9.]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건의·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1.9.]

제 4 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09.1.9.]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

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9.]

제16조(퇴직자·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목개정 2009.1.9.]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정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3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 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조 삭제 <2010.2.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 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정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융자관리계정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2.8.]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으며, 용자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용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용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 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5.30.]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2.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6>부터 <418>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4. 지방교부세법령

- ✧ 지방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text{○ 조정률} = \frac{\text{보통교부세의 총액}}{\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3 3. 분권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전문개정 2009.2.6.]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정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일:2012.7.1.] 제6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 과 같	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전문개정 2009.2.6.]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지역관리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목적세 수입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09.2.6.]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 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填)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	징수교부금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금액 4.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이자수입·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3.1.1.]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산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3.7.]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2013.3.23., 2014.11.19.〉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 삭제 〈2011.12.30.〉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부세 중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 <2014.1.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2013.3.23., 2014.11.19.)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①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경상적 수요 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이하 “비경상적 수요 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제14조(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요의 산정방식은 별표 11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교부액은 분야별 사업수요,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해당 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교부액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	[전문개정 2011.12.30.]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분권교부세의 산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 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를 객관적인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상황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중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시행일:2012.7.1.]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4(관련 규정의 준용)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	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시행일:2012.7.1.]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부·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4조 삭제 <1999.12.28.>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	이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④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2조의2 삭제 <2008.10.20.>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설치·분리·병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전문개정 2011.12.30.]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418>까지 생략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8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 1 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 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 제86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승인·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	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7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범위) 법 제2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사·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5.9.25.] 제24조제1항 제 5 절 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

제 4 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2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하고 통합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통합 공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2.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3.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 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장 보 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	제 5 장 보 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사상 조치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33〉부터 〈418〉까지 생략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8호, 201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	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9.21.]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이사회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이사회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21.]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21.]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21.]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0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3. 4급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11조(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반영 2. 사업규모·조직·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9.21.]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를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2>부터 <418>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 칙 〈제11398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4.]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11.24.,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추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 2009.5.21., 2013.3.23., 2014.11.1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 상대방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8.6.]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시행일 미지정]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	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 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설립된 회계법인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삭제 <2013.1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9.15.] 제 2 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	제 2 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 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전문개정 2010.7.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工种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확정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	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	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에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가격 ② 삭제 <201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2.5.,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		의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1 12. 용역: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0.11.5.]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		기업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전문개정 2010.11.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차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①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 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나. 하천공사 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률 제9423호(2009.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	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	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10.11.5.]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5.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5.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하여 작	[전문개정 2010.11.5.]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6.]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	입찰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전문개정 2010.11.5.] 제23조 삭제 <2010.11.5.>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전문개정 2010.11.5.]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전문개정 2010.11.5.]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다음 각 목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6.>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납품능력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 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 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전문개정 2010.11.5.]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	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전문개정 2010.11.5.]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5. 지명대상자의 업체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	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6.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자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 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	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전문개정 2010.11.5.]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전문개정 2010.11.5.]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42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 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 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 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삭제 <2013.11.20.> 마. 삭제 <2013.11.20.> 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 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 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 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7.26.]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 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4.2.5.]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 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 4 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	[전문개정 2010.11.5.]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 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전문개정 2010.7.26.]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11.5.]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입찰서)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 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	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전문개정 2010.11.5.]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며.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5.]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추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 조달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 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 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8.5.]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5.2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 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 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 5 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2.5.]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4.2.5.]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5.]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0.7.26.>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既成) 부분에 대한 미지금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에금증서·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에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6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전문개정 2010.11.5.]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	[전문개정 2010.11.5.]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7.26.]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 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 · 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	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4.2.5.]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 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 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10.7.26.]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	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전문개정 2010.11.5.]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제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에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	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7.26.]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 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 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79조(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7.26.] 제81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 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전석(전석) 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전문개정 2010.7.26.]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 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 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법 제2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7조(종합계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경우에는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10.7.26.]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 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 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 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 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 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 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 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제16호 또는 제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 2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등”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5.] 제93조 삭제 <2014.2.5.> 제 6 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	제 6 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따라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10.11.5.]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81조 삭제 <2007.1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⑤ 삭제 <2009.11.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8.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정성 심사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을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본조신설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4.5.22.]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02조 삭제 <2007.9.2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 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전문개정 2010.7.26.] 제104조 삭제 <2007.9.20.> 제105조 삭제 <2009.8.5.> 제 7 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7 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 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2.>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영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 8 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 삭제 <2014.2.7.>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외무 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바. 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아.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전문개정 2010.11.5.]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5.]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11조(재심청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26.]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 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5.23.>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10.7.26.]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조정외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조정) ①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7.26.]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 8 장 보 고 및 기 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 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5.]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중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9.15.>]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8.5.] [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9.15.>] 제 9 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2011.9.15.>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15.]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10.29., 2010.12.13., 2011.9.15.〉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9.20.]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②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0조 삭제 <2011.9.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삭제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 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 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 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목개정 2014.5.22.]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38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9.15.] 제 10 장 보고 및 기타 〈신설 2014.8.6.〉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부 칙 〈제25770호, 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0.2.4.]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2.4.]	
제 2 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중물	제 2 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4.24.]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	[전문개정 2009.4.24.]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	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6조(등기·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2.4.]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장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8.4.>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 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제 3 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14.>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본조신설 2010.8.4.]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이고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본조신설 2010.8.4.]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귀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 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 1 절 통 칙 <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제 4 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 1 절 통 칙 <개정 2009.4.24.>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27., 2014.7.7.>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4.7.7.]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賃)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한다. <개정 2009.7.27.>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의2(지식재산권의 사용·대부·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19.>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1.7.19.]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경, 조립,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 절 대 부 <개정 2008.12.26.>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④ 개척·매립·간척·조립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 2 절 대 부 <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6.2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frac{\text{경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times \frac{\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경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본조신설 2013.6.21.]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4.24.]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 절 매 각 <개정 2008.12.26.>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	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 3 절 매 각 <개정 2009.4.24.>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1.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불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4.7.7.]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본조신설 2014.7.7.]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7.7.〉]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8.12.26.]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 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 절 교 환 <개정 2008.12.26.>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09.4.24.] 제 4 절 교 환 <개정 2009.4.24.>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5 절 양 여 <개정 2008.12.26.>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4.7.7.] 제 5 절 양 여 <개정 2009.4.24.> 제46조(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8.4.> 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8.4.>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4.24.] 제47조 삭제 <2006.12.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6 절 신탁 등 〈개정 2008.12.26.〉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제 6 절 신탁 등 〈개정 2009.4.24.〉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0.2.4.]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24.]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 “사용·수익”은 “대부”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4.]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2.4.> [본조신설 2008.12.26.]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 5 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 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4.] 제 5 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채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전문개정 2008.12.26.]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4.]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立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4.]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09.4.24.] 제51조 삭제 <2010.8.4.>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 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6 장 물품 통칙 제48조 삭제 <2010.2.4.>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1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6 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4.7.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54조(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해당 규격서 2.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전문개정 2009.4.24.]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12.26.]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26.] 제 7 장 물품의 관리 제 1 절 통 칙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 7 장 물품의 관리 제 1 절 통 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7.7.,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4.]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9.4.24.]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63조 삭제 <2010.8.4.> 제64조 삭제 <2010.8.4.> 제65조(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21., 2014.1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 절 취 득 <개정 2008.12.26.>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전문개정 2009.4.24.]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제 2 절 취 득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3 절 보 관 <개정 2008.12.26.>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받	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 3 절 보 관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4 절 사 용 <개정 2008.12.26.>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전문개정 2009.4.24.] 제 4 절 사 용 제73조(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4.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 5 절 처 분 <개정 2008.12.26.>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 5 절 처 분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12.26.] 제7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4.24.]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전문개정 2008.12.26.]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 장 보 칙 〈개정 2008.12.26.〉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4.24.] 제 8 장 보 칙 〈개정 2009.4.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져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익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전문개정 2008.12.26.]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전문개정 2009.4.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5조의2(지방매장물의 발굴)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이하 “지방매장물”이라 한다)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해당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④ 발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장기관은 발굴자의 발굴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발굴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발굴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을 따르고,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는 “공유”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또는 국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7.7.]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13.3.23., 2014.1.7., 2014.11.19.〉 [전문개정 2008.12.26.] 제 9 장 별 칙 〈개정 2008.12.26.〉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전문개정 2008.12.26.]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	[전문개정 2009.4.24.]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4.〉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24.]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 불용품 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본조신설 2010.8.4.]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 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 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 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 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 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4.24.] 제94조 삭제 <2010.8.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7.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8.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2.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본조신설 2013.6.21.]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131〉부터 〈418〉까지 생략

9. 지방공기업법령

- ✧ 지방공기업법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 방 공 기 업 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규 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 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2 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1절 통 칙 〈개정 2011.8.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2 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①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 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2 절 조 직 <개정 2011.8.4.>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20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처리 하여야 한다.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2013.3.23., 2014.11.19.>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구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6조(계리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 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용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제목개정 2005.3.31.]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 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인도·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양도·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배수량 또는 조정량(m³)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km)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km) 4. 주택공급사업 : 세대·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삭제 <2011.5.27.> 제11조 삭제 <2002.7.26.> 제12조 삭제 <2002.7.26.>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①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3 절 재 무 <개정 2011.8.4.>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권·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변질·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독립재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수리·가공·구입·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2013.12.5.)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목개정 2013.12.5.]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용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전문개정 2005.3.31.]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	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12.5.>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정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 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 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대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	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지반이 용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보급된 경우 4. 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 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3.9.19.]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①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	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	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13.12.5.> ②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3.9.19., 2013.12.5.> 제21조(감가상각액의 처리)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처리한다.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	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 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3.9.]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7.3.9.>]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2012.1.6., 2013.12.4.>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계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기업은행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3.12.4.]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①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	[전문개정 2013.12.5.] 제24조 삭제 <2011.5.27.>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3.25.> ③ 삭제 <2002.3.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	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③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 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 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①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7.17.>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2008.7.17.>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8.4.]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 등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개정 2011.8.4.>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5 절 보 칙 <개정 2011.8.4.>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의 처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7.3.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43조 삭제 <2002.6.19.> 제44조(경영공시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 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 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 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 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 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9.21.]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3 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 1 절 설 립 <개정 2011.8.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지방공사 · 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2005.3.31., 2011.3.2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	2013.12.4.) 1.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 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6.19., 2008.7.17., 2013.3.23., 2014.11.19.>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	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4.]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의 신청) 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2 절 임원 및 직원 <개정 2011.8.4.>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주식인수·현물출자·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삭제 <2009.9.21.>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	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7.3.9.] [중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07.3.9.>]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 3 절 재무회계 <개정 2011.8.4.>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 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	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 [본조신설 2002.6.19.] [제목개정 2009.9.21.]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3.9.>]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 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본조신설 2013.6.4.]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1.]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	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12.4.]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3.12.4.>]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6.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	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 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전문개정 2011.8.4.] 제70조 삭제 <1996·12·3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12.4.]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4 절 감 독 <개정 2011.8.4.> 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 5 절 보 칙 <개정 2011.8.4.>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3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5(명칭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3.12.4.]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제 4 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4.]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 결의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009.9.21.>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4장의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개정 2011.8.4.〉 제77조의3 삭제 〈2014.3.24.〉 제77조의4 삭제 〈2014.3.24.〉 제77조의5 삭제 〈2014.3.24.〉 제77조의6 삭제 〈2014.3.24.〉 제77조의7 삭제 〈2014.3.24.〉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6.19.〉 제67조의2 삭제 〈2014.9.24.〉 제67조의3 삭제 〈2014.9.24.〉 제 4 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 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 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8조의2 삭제 〈2009.9.21.〉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009.9.21., 2013.3.23., 2014.11.19.〉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 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9.21.]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과장이 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21.] 제74조(수당 등)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21.]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5 장 보 칙 <개정 2011.8.4.>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보 칙 제76조(경영지도법인) ① 법 제7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은 회장(원장 또는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②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선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할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	④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⑥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7조 삭제 <2002.6.19.> 제78조(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 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9.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6.1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8.4.]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9조의2 삭제 <2002.3.25.>	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80조 삭제 <2002.3.25.> 제 6 장 별 칙 <개정 2011.8.4.>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8>부터 <418>까지 생략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8.4.]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 도로명 주소법
- ✧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 ✧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 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7., 2011.12.30.>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4.]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	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3. “유사도로명”이란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를 말한다. 4.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5.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6. “임시도로명주소”란 제9조의2에 따라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에 임시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	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전문개정 2009.8.14.]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0.4.7.>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역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있다.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전문개정 2009.8.14.]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2014.11.19.)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면 지역 도로구간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군도(君道)·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5조(기초조사)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강·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전문개정 2009.7.1.]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①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역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5.6.4.]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2. 도로구간의 중심선(도로 폭의 중심을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교차로인 경우 외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을 것 5.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6.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준과 다르게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건물등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3(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	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4 영 제7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판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	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3. 해당 도로명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건물번호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립할 때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7조(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일인이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이하 “서면동의 대상자”라 한다)의 현황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서면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나.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다.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영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전문개정 2009.8.14.] 제6조(도로명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4. 도로구간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의 심의 결과 도로구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와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내용 및 변경 절차(도로구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2.30.>] 제7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서면동의 만료일”이라 한다)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 만료일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도로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 2.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도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12.30.>]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럼(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	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隣接)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5(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폐지가 고시되면 그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같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6(도로망)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의 설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기초구역(경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변경·폐지 3. 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4. 그 밖에 기초구역과 구역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이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①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한 도로구분을 붙여서 부여·변경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	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 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⑧ 도로·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신설 2011.12.30.> [전문개정 2009.8.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30.>]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구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6으로 이동 <2011.8.4.>]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③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 구역 경계변경으로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었으나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④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같고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만 달리한 경우도 도로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2.30.>] 제10조(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 세부기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결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전문개정 2009.8.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제11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세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부여·변경·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상세주소(동·층·호의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폐지 3. 그 밖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7로 이동 <2011.8.4.>]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시장등이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장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⑥ 도로구간의 폐지나 도로명의 폐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명은 그 폐지된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이나 제7조	기준) ① 영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3. 상업용 건물등 4. 공업용 건물등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② 영 제11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2조(구역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11조의7제4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예비로 두는 구역번호는 연속되는 번호로 두는 것을 원칙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3제5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9., 2011.12.30.>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⑧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기존 도로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도로명 변경으로 보아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로 하되,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연속적인 번호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2조의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영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 2. 제1호의 위치에 부합하는 지점번호의 선정 3. 그 밖에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점번호의 부여방법과 기준,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방법, 선정된 지점번호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다. <신설 2011.9.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	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 유무 3. 그 밖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6.] 제12조의4(상세주소의 부여) ① 법 제8조의4 및 영 제11조의11에 따라 부여하는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동번호는 건물군을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2. 건물군 내에 있는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동번호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1.8.4.>]	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여할 수 있다. 3.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에 호수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4.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하여 각각의 호수로 하고,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 또는 문자를 합한 호의 호수로 부여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래의 호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제12조의5(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임차인에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에서 이동 <2011.8.4.>]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12조의6(공문서 간 상세주소의 일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전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공문서 간의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층수·호수는 영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13조(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영 제11조의13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만을 사용한다. 2.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제공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본조신설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제공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	2014.11.19.> [전문개정 2009.8.14.] [제8조에서 이동 <2011.12.30.>]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 위치 및 구역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5.6.4.] 제9조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일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1.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제7항제1호의 기준일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일 것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2.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을 것 ⑨ 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제8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⑩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등은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⑪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1.12.30.>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② 임차인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17조(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 일괄변경 신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移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4(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부여하되,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5(기초번호의 부여·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할	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5. 영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문서상의 주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	때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변경할 수 있으며, 도로명을 설정·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변경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부여·변경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기초번호만 변경할 수 있다. 1. 복잡하게 부여된 기초번호를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2. 건물등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	[본조신설 2011.12.30.]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제9조에 따른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명에도 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4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	보통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과 관할 행정구역 2.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3.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이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변경하려는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한 건물번호의 개수와 그 기초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수 3.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7.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15. 제17조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 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4.1.]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	4.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기초번호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②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물등에 대해서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2	청서: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②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의 대장 중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에서 이동 <2011.12.30.>] 부 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	개 이상일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중앙에서의 수직투영선과 수직으로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③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1.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2.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 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처리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도로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제25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9조의2(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 ① 건물등의 신축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등에게 해당 건물등에 대한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로명과 임시 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건물번호(이하 “임시건물번호”라 한다)는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	④ 시장등은 건물등의 신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시도로명주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이 신축되면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0조(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선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4. 도로명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6. 필지 경계와 지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5.6.4.] 제19조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8. 건물번호(임시건물번호를 포함한다)와 그 주된 출입구 9. 국가기초구역(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구역번호 10.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의 체계 11.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위치 및 시설물에 표기한 지점번호의 위치 12.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이하 “지점번호판”이라 한다)의 위치 13. 상세주소 및 그 위치. 다만, 상세주소의 위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의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4.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15.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소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되지 아니하는 주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	16. 그 밖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도로명주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1조(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①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이하 “도로구간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변경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의 경우: 시·군·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본조신설 2011.8.4.]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 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것 3.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 지더라도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등을 설정·부여·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시장등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	경 사유 2)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사유 나. 시장등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제출받은 자료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장등과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이하 “인접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등(이하 “인접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군·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군·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등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2) 시장등의 의견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가목1)의 자료 2)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세부 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5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관한 의견 제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8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8.4.]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3항에 따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3. 시·도지사의 의견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지사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4.11.19.〉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가목의 자료 2)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4)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도지사 및 인접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4(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의4제6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변경 3. 제7조의3제12항 각 호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4. 제7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초번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이 조에서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4.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5.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②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을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지 고려할 것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고시된 후 변경·폐지된 도로명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③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6(기초구역의 설정기준) ① 법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지리적 특성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1. 행정구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여지역의 경계 2.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7(구역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하나의 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 ② 구역번호는 아라비아숫자 5자리로 하되, 구역번호로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초구역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구역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시·도와 시·군·구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번호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예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구역번호는 기초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⑥ 폐지된 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8(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할 수 있다. 1. 기초구역의 설정 가. 법 제8조의3에 따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 나.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토지가 발생한 경우 다. 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2. 기초구역의 변경 가.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때 기초구역의 변경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필요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초구역을 분할하는 경우 1) 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인구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2) 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사업체 종사자 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다.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기초구역의 폐지 가. 여러 개의 기초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을 신축하여 기초구역의 합병이 필요한 경우 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초구역의 활용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② 구역번호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와 함께 부여·변경·폐지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이하 “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는 경우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현황 나. 부여 가능한 예비구역번호 다. 설정·부여하려는 사유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현황 나. 기초구역등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④ 시장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자료와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와 검토 결과를 받으면 통계·우편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의견을 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려하여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9(기초구역등의 이력관리 및 안내) ① 시장등은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구역등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시장등이 고시한 기초구역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단위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각종 구역과 관련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0(기초구역등의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사하여야 한다. 1.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활용범위 2. 설정·부여된 기초구역등의 적정성 3.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기초구역등의 부여·변경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구역번호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려는 경우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3. 상세주소 적용범위 및 해당 출입구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된 상세주소와 그 위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3(지점번호의 부여기준)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지점번호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지점을 기본단위로 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② 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가로방향의 문자에 세로방향의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 정수에 세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 물 등) ①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 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 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 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 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 설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설물 에 표기하는 지점번호는 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④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1조의13에 따른 지점번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5(지점번호의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① 공공기관장은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통보하기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의5제4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지점번호 검증자”라 한다)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지점번호를 해당 시설물에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표기·설치한 날부터 1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 이내에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점번호 검증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공공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표기나 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점번호 검증자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⑦ 시장등은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이나 지점번호판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또는 지점번호판의 현황과 그 지점번호 및 철거일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규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⑩ 시장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부착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6(지점번호 현황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 여부 3. 표기된 지점번호의 관리현황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①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란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상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활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③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1.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도로명주소안내도가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산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3.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전산파일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 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7.1.]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교부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군·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목개정 2011.12.30.]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7.1.]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제18조(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0조(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전문개정 2009.7.1.]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의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 <개정 2011.12.30.>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7.1.]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6조의2 각 호의 문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문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문서상의 주소 변경을 요청한 사실과 대상 문서목록을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불구하고 시장등은 긴급히 공부(公簿)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공부에 주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도로명주소와 그 사유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⑦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⑧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히 고시한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24조(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25조(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25조의2(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한 경우 가. 기초구역의 경계 및 구역번호 나. 해당 기초구역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기초구역에 소재한 지번 (다른 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고시 예정일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한 경우 가. 종전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새로 설정하려는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고시 예정일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한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의 제1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및 폐지고시 예정일 ② 시장등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이 고시된 경우에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6조(정보의 공유)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3.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를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공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등의 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6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문서상의 주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본조신설 2011.12.30.] 제26조의3(주소의 일괄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직접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나 출장소장을 거쳐서 시장등에게 일괄변경하려는 문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괄변경 신청을 받은 문서에 기재된 주소가 신청한 변경 전 주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제3항 후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7.1.] 제2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제29조(주소전환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0.4.7.]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6〉부터 〈418〉까지 생략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7., 2011.12.30.〉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 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 번호 및 “번길” 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 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3. “유사도로명”이란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를 말한다. 4.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5.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6. ” 임시도로명주소 “란 제9조의2에 따라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에 임시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0.4.7.>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 시·도 “라 한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 행정시 “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 라 한다]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5조(기초조사)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①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의 중심선(도로 폭의 중심을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교차로인 경우 외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을 것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6.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건물등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3(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과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3. 해당 도로명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건물번호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일인이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이하 “서면동의대상자”라 한다)의 현황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서면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4. 도로구간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의 심의 결과 도로구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결과와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내용 및 변경 절차(도로구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서면동의 만료일”이라 한다)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 만료일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도로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 2.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隣接)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5(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폐지가 고시되면 그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초번호도 같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6(도로망)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①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한 도로구분을 붙여서 부여·변경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③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 구역 경계변경으로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었으나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④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같고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 만 달리한 경우도 도로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시장등이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장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⑥ 도로구간의 폐지나 도로명의 폐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명은 그 폐지된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이나 제7조의3제5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9., 2011.12.30.>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⑧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기존 도로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도로명 변경으로 보아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1항의 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일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항에 따른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1.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제7항제1호의 기준일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일 것 2.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을 것 ⑨ 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제8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⑩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⑪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1.12.30.>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함께 변경하는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4(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부여하되,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5(기초번호의 부여·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변경할 수 있으며, 도로명을 설정·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변경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부여·변경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기초번호만 변경할 수 있다. 1. 복잡하게 부여된 기초번호를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2. 건물등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과 관할 행정구역 2.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3.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이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변경하려는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건물번호의 개수와 그 기초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수 3.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기초번호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②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물등에 대해서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중앙에서의 수직투영선과 수직으로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③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1.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2.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 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도로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제25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9조의2(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 ① 건물등의 신축에 관한 허가·승인등을 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등에게 해당 건물등에 대한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건물번호(이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임시건물번호”라 한다)는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등의 신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시도로명주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이 신축되면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0조(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4. 도로명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6. 필지 경계와 지번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8. 건물번호(임시건물번호를 포함한다)와 그 주된 출입구 9. 국가기초구역(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구역번호 10.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의 체계 11.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위치 및 시설물에 표기한 지점번호의 위치 12.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이하 “지점번호판”이라 한다)의 위치 13. 상세주소 및 그 위치. 다만, 상세주소의 위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의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4.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15.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16. 그 밖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도로명주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1조(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①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이하 “도로구간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변경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의 경우: 시·군·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것 3.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지더라도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등을 설정·부여·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경우 2. 시장등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2)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사유 나. 시장등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제출받은 자료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장등과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이하 “인접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등(이하 “인접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군·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군·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등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2) 시장등의 의견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가목1)의 자료 2)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3. 시·도지사의 의견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도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지사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가목의 자료 2)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4)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도지사 및 인접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4(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의4제6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변경 3. 제7조의3제12항 각 호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4. 제7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초번호만의 변경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이 조에서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4.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을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지 고려할 것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고시된 후 변경·폐지된 도로명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③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1조의6(기초구역의 설정기준) ① 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지리적 특성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1. 행정구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7(구역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하나의 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 ② 구역번호는 아라비아숫자 5자리로 하되, 구역번호로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초구역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구역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시·도와 시·군·구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번호를 예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구역번호는 기초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⑥ 폐지된 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8(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할 수 있다. 1. 기초구역의 설정 가. 법 제8조의3에 따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 나.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토지가 발생한 경우 다. 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기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2. 기초구역의 변경 가.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때 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초구역을 분할하는 경우 1) 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인구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2) 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사업체 종사자 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다.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변경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요청하는 경우 3. 기초구역의 폐지 가. 여러 개의 기초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 다)을 신축하여 기초구역의 합병이 필요한 경우 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초구역의 활용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② 구역번호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와 함께 부여·변경·폐지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이하 “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는 경우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현황 나. 부여 가능한 예비구역번호 다. 설정·부여하려는 사유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현황 나. 기초구역등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④ 시장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자료와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와 검토 결과를 받으면 통계·우편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9(기초구역등의 이력관리 및 안내) ① 시장·군수는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구역등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한 기초구역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단위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각종 구역과 관련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0(기초구역등의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활용범위 2. 설정·부여된 기초구역등의 적정성 3.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기초구역등의 부여·변경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구역번호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의 장의 의견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3. 상세주소 적용범위 및 해당 출입구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된 상세주소와 그 위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3(지점번호의 부여기준)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지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번호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지점을 기본단위로 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② 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가로방향의 문자에 세로방향의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 정수에 세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 을 삽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설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 표기하는 지점번호는 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④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란 제11조의13에 따른 지점번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5(지점번호의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① 공공기관장은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통보하기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의5제4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지점번호 검증자”라 한다)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지점번호를 해당 시설물에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표기·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점번호 검증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공공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표기나 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점번호 검증자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⑥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시장등은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이나 지점번호판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또는 지점번호판의 현황과 그 지점번호 및 철거일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규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⑩ 시장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부착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의16(지점번호 현황의 조사) 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2.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 여부 3. 표기된 지점번호의 관리현황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①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란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상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활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③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1.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도로명주소안내도가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산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3.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전산파일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7.1.]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교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군·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목개정 2011.12.30.]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료 제공기관에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대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제18조(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7.1.]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0조(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명주소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전문개정 2009.7.1.] 제21조(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7.1.]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7.1.]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6조의2 각 호의 문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문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경우 시장등은 해당 문서상의 주소 변경을 요청한 사실과 대상 문서목록을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긴급히 공부(公簿)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공부에 주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도로명주소와 그 사유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⑦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⑧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히 고시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24조(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1.] 제25조(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7.1.] 제25조의2(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한 경우 가. 기초구역의 경계 및 구역번호 나. 해당 기초구역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기초구역에 소재한 지번 (다른 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고시 예정일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한 경우 가. 종전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새로 설정하려는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고시 예정일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한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및 폐지고시 예정일 ② 시장등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이 고시된 경우에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6조(정보의 공유)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 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3.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를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공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6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문서상의 주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본조신설 2011.12.30.] 제26조의3(주소의 일괄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팔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직접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나 출장소장을 거쳐서 시장등에게 일괄변경하려는 문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괄변경 신청을 받은 문서에 기재된 주소가 신청한 변경 전 주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제3항 후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주소전환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0.4.7.]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6〉부터 〈418〉까지 생략	

II. 지방교육재정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규정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규 칙 [시행 2014.7.31.] [교육부령 제43호, 2014.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2.10.15., 2013.3.23.〉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목개정 2010.1.1.]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 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	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4.12.30.]	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③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31.]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존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	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지·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중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3.3.23.>	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	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4.7.31.]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10.3.31.> [전문개정 2004.12.30.]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부 칙 <제25781호, 2014.11.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	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1.> [전문개정 2008.2.28.]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43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4.12.30.] 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0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0.,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0.12.3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4.12.30.]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4.12.30.] 부 칙 <제12153호, 2014.1.1.>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2.]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도议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 2 장 교육위원회 제 1 절 설치 및 구성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위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2.26.]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6.11.>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 2. 제2항제3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과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2 절 교육의원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위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8조(교육의원의 선거)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0.2.26., 2011.7.21.>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⑦ 제5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3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0.2.26., 2011.7.21., 2012.1.26.>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개정 2010.6.29.,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6.29.] 제7조 삭제 <2008.10.20.>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 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6.1.1.] 제9조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	향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 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의2(교육위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위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위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도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8.] 부 칙 〈제25375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의3(교육위원의 퇴직) 교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위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3 절 권 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4 절 회 의 및 사무직원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	로 한다.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④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삭제 <2010.2.26.>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3 장 교육감 제 1 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26.] 제23조(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2.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2.26.]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议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1.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도의회위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③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 3 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 4 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14.2.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2.13.>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개정 2014.2.13.>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본조신설 2010.2.26.]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법」의 별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별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4.5.] 제 7 장 교육의원선거 <신설 2010.2.26.> 제51조(선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위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위원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위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단서 및 각 호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196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제1항 외에 「공직선거법」 제71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 중 “별표 1·별표 2·별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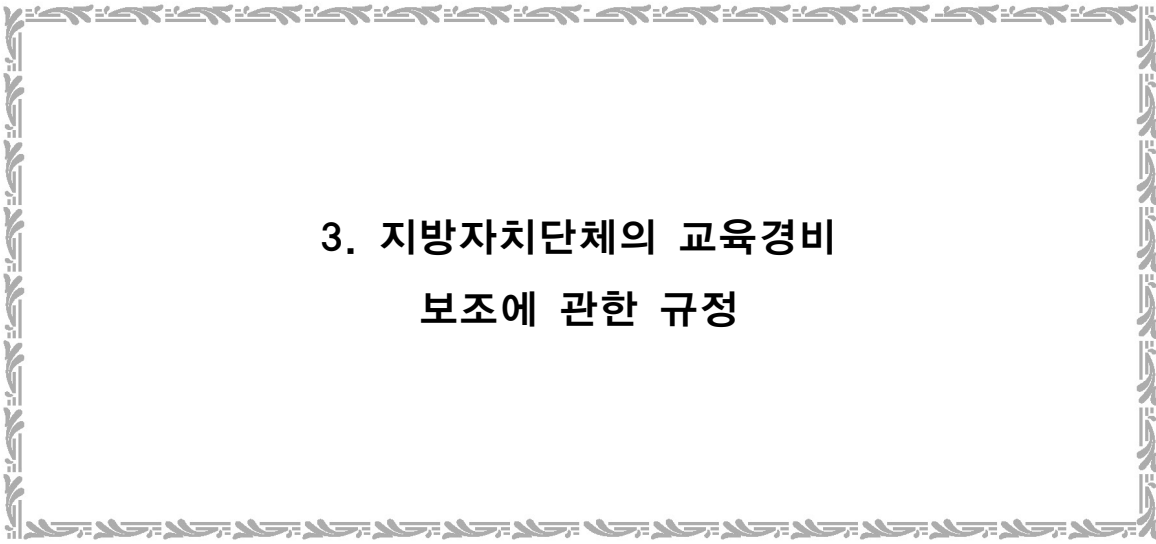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 중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에 속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 중 “10인 이내”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인 이내”로 본다. 10.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 중 “각 2대·2척 이내”는 “각 5대·5척 이내”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5.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 중 “4천만원”은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3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16.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의원선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7.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8.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9.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의 보궐선거,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제외한다), 중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제8호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8 장 별 칙 〈신설 2010.2.26.〉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2.26.]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12.27.]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부 칙 〈제20464호, 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Ⅲ. 국가재정

1. 국가재정법/시행령
2. 국가회계법/시행령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4. 국고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1. 국가재정법령

- ✧ 국가재정법
- ✧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 2014.4.2.] [법률 제12161호, 2014.1.1.,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9.18.] [대통령령 제25606호, 2014.9.1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1.1.〉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 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 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⑧법 제7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 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4조(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삭제 <2014.1.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9.18.]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 <2011.12.30.>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금융융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정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11.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처·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1. 설치목적의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산 제 1 절 총 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 1 절 총 칙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제목개정 2010.7.9.] 제9조의2 삭제 〈2013.2.15.〉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27조 삭제 <2013.1.1.> 제 2 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	제 2 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예산소요 산출기초·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8.]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삭제 <2014.4.1.>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획서의 제출을 생각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08.7.23., 2010.11.10.〉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나.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	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나 타당성 재조사에 앞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 재조사나 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담수물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	[본조신설 2013.12.30.]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예산의 전용·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	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삭제 <2014.9.18.>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목개정 2010.7.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3 장 결 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3 장 결 산 제26조 삭제 <2009.3.25.> 제27조 삭제 <2009.3.25.>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 4 장 기 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금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② 삭제 <2008.12.3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 삭제 <2009.3.25.>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73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9.] 제32조 삭제 <2009.3.25.>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 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삭제 〈2009.3.25.〉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1.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재정부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목개정 2008.12.31.]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약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3.25.]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 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2008.12.31.>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은 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제 5 장 재정건전화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2.6.]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를 말한다. <신설 2010.7.9.>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입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제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08.2.29.>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	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 6 장 보 칙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6 장 보 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 <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와 통지절차 등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7 장 별 칙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2161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언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언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언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언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언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부 칙 〈제25606호, 2014.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가회계법령

- ✧ 국가회계법
- ✧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8.]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3. 삭제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 <2008.12.31.>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	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8., 2013.3.23., 2014.11.19.> 1.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 3.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간 회계제도의 연계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2 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	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삭제 <2008.12.31.> 제 3 장 결 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	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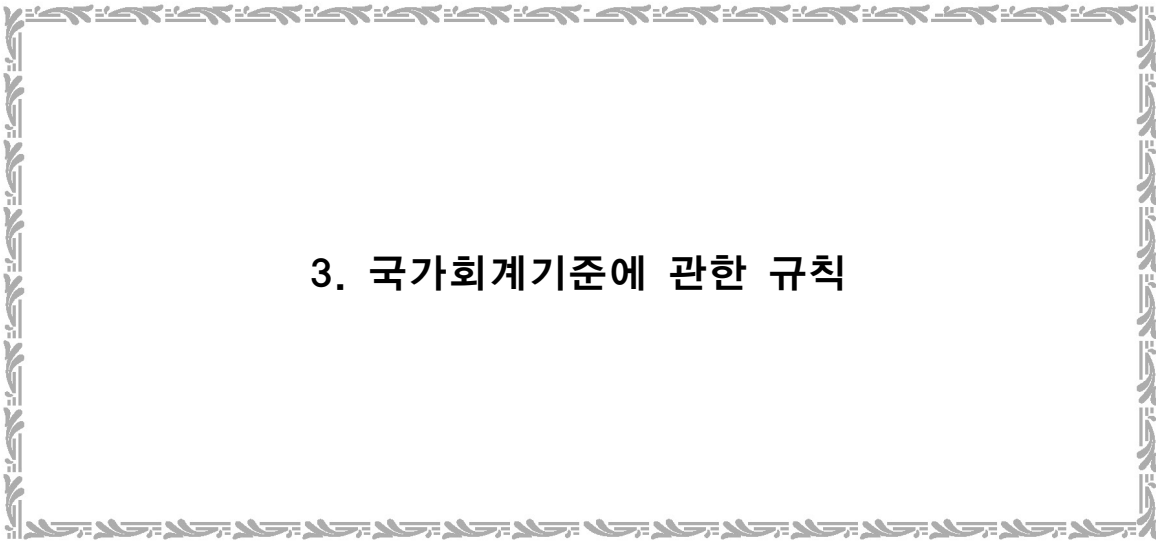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본조신설 2008.12.31.]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 4 장 보 칙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시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⑦부터 <418>까지 생략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 한다. ④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5.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재정상태표

제 1 절 총 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

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자 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2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제13조(일반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또는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제14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6조(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 3 절 부 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2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 4 절 순자산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 3 장 재정운영표

제 1 절 총 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3.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 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재정운영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 2 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 <2014.2.27.>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 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②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의 정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④ 재고자산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4.2.27.]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2조(국채의 평가) ①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누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5조(유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유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자사업에서 발생한 유자금 원금과 추정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②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

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③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移延)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제50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③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 5 장 순자산변동표

-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④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 6 장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신설 2010.1.12.〉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2.]

부 칙

〈제444호, 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I.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4. 국고금 관리법령

- ✧ 국고금 관리법
-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1.10.5.] [법률 제10526호, 2011.4.4.,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11.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6.] [대통령령 제25530호, 2014.8.6.,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 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4.4.]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전문개정 2012.12.27.] 제4조(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전문개정 2011.4.4.]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여비·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4.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비·제조비·물건매입대가·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전문개정 2012.12.27.] 제 2 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27.]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장 수 입 <개정 2011.4.4.>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 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3 장 수 입 제 1 절 징 수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제 2 장 수 입 제 1 절 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 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	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점”이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와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	소재지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①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	다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6.]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7.]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8조(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 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절 수 납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제 4 절 수 납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3 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 제 5 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 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전문개정 2012.12.27.]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본조신설 2010.1.8.] 제 6 절 수입관리 등 제32조(독촉 등)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03.12.31.〉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재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징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6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2.12.27.] 제 4 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 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사용자금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관리)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 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 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3 장 지 출 <개정 2011.4.4.>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5 장 지 출 제 1 절 지출원인행위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	제 4 장 지 출 제 1 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3.12.3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의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 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 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공사·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12.27.]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	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6.30.> ③ 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출절차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제45조(계좌이체)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	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③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	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12.27.]	정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 출급식으로 한다. <개정 2008.10.1.>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소관별·기금별로 1명(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 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2008.10.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장 자금관리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입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	제 3 절 지출의 특례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 제 3 절 지출의 특례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10.1.〉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5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27.]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 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 변상금 4. 삭제 〈2007.11.6.〉 5. 민간이전 중 구료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4.4.]	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비의 지급시기·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재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	[전문개정 2012.12.27.]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운영하려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	③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	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운영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잔도·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를 중앙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1.4.4.]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전문개정 2012.12.27.]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를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신용카드업자의 변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2조(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회계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0조(선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비상출동·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전문개정 2003.12.31.]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	〈개정 2007.11.6., 2008.10.1.〉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 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 변상금 6. 삭제 〈2007.11.6.〉 7. 민간이전 중 구료비 8. 위문금·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1조(개산금)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概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27.]	9. 특수활동비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전문개정 2012.12.27.]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	〈개정 2008.10.1., 2011.10.4.〉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목개정 2003.12.31., 2011.10.4.] 제69조(지급금의 반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개정 2003.12.3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개산금)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전문개정 2003.12.31.]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①한국은행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3.12.31., 2011.10.4.〉 ②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 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③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 까지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④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⑤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 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목개정 2003.12.3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절 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 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4 절 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 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6 장 자금관리 제 1 절 자금계획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전문개정 2012.12.27.]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상 계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①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 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①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①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6 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개정 2005.6.30.> 제81조(모집발행) ① 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할 수 있다.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 49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신설 2005.6.30.〉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1.〉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개정 2008.10.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제잉여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2 절 자 금 의 조 달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85조(입찰참가자격)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87조(입찰보증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② 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	로 충당할 수 있다.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3 절 재정증권의 발행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90조(자금의 이체)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제 7 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 1 절 통 칙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12.27.] 제54조(공고의 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신문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인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을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병합) 재정증권의 소지자는 그 재정증권의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교환·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등록하려는 채권자는 한국은행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재정증권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채권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증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재정증권의 발행 회차 및 발행일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7.] 제60조(등록의 신청) ① 재정증권의 매수인은 그 증권을 등록하려면 대금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⑥ 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납입할 때에 재정증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는 그 증권을 등록하려면 재정증권 등록청구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1조(등록 변경)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2조(등록말소)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등록을 말소하고 재정증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록금액과 발급받으려는 재정증권의 권종별(券種別) 수량을 분명하게 적은 재정증권 등록말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할 재정	〈개정 2008.10.1., 2011.10.4.〉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한국은행 등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국고대리점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출납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지체 없이 집중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예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증권의 권종 및 수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절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 상환신청서에 따라 그 증권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3조(질권의 등록)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4조(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재정증권 등록부에 신규등록·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한국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재정증권 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12.27.]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 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재정증권 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변경·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4 절 국고금의 운용 <개정 2005.6.30.>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	월 15일로 한다.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 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7.>	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개정 2008.10.1.> 제 2 절 수입금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제 3 절 지출금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4조(담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	의 신설·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야 한다.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 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 제 4 절 장부 · 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출납공무원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2.12.27.]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2조(대장의 비치·작성)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전문개정 2012.12.27.]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기획재정부	하는 경우 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영 제 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7 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제116조(검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대차대조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8 장 출납공무원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같다)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1조(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9 장 장부 ·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 1 절 장부의 작성 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양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양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2 절 보고서의 제출 등 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2.12.27.] 제98조(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이용(移用)·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2조(오류의 정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5 장 보 칙 <개정 2011.4.4.>	양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4조(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7.] 제 10 장 보 칙	제 9 장 보 칙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	제10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과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제 1 절 결의서·장부 및 보고서 제118조 삭제 <2003.12.31.>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세입부: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②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tr><th>회계 관계 공무원</th><th>대리자의 명칭</th><th>분임자의 명칭</th><th>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th></tr><tr><td>수입징수관</td><td>대리수입징수관</td><td>분임수입징수관</td><td>대리분임수입징수관</td></tr><tr><td>재무관</td><td>대리재무관</td><td>분임재무관</td><td>대리분임재무관</td></tr><tr><td>지출관</td><td>대리지출관</td><td>분임지출관</td><td>대리분임지출관</td></tr><tr><td>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td><td>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td><td>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td><td>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td></tr><tr><td>수입금출납공무원</td><td>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td><td>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td><td>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td></tr><tr><td>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td><td>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td><td>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td><td>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td></tr><tr><td>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td><td>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td><td>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td><td>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td></tr></table> [전문개정 2012.12.27.]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	회계 관계 공무원	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수입금출납공무원	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개정 2008.10.1.>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회계 관계 공무원	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수입금출납공무원	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 및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	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	제2 절 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5.6.30.]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	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12.27.]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	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②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 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 3 절 오류정정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 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 부장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 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 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 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 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	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 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 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8.6.]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 재정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 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 구는 당해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 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 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 해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 행동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은 회 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 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 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부 칙 〈제10526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	부 칙 〈제25530호, 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 4 절 사무의 인계 등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부터 적용한다.		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인수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다. <개정 2005.6.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인수) ①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인계·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다. <개정 2008.10.1.>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④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7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⑥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아니한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 증명 ⑧제132조제2항·제3항 및 이 조 제7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부 칙 〈제444호, 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5.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령

-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제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1.23.] 제2조 (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4조 (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0> 까지 생략 <70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 칙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8> 까지 생략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 2 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 3 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반환 명령에 따른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에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 4 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부 칙 〈제25781호, 2014.11.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 5 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 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 6 장 보 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 7 장 별 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⑦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6.]

[대통령령 제24156호, 2012.11.6., 전부개정]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毀損)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3백만원 미만
 - 나.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 다. 4급·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1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 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 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 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 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손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5백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 는 부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 는 부대: 건당 3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 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3백만원 미만 마.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 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 서: 건당 2백만원 미만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손실·망실 처 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 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 하게 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망실되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156호, 201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9.3.25.]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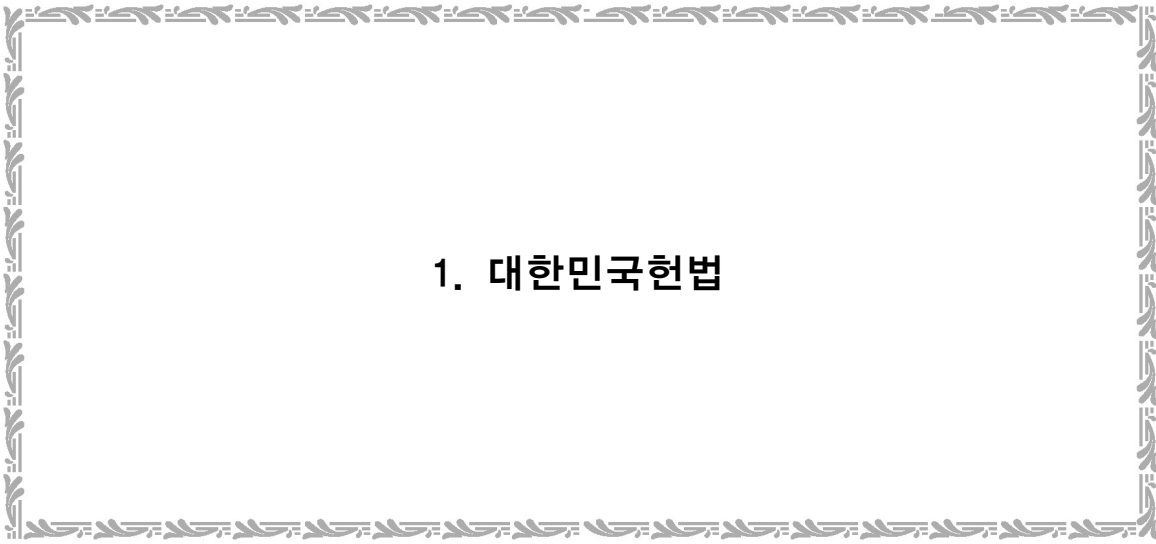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填)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전문개정 2009.3.2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IV. 기 타

1. 대한민국헌법
2. 지방자치법/시행령
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1 장 총 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3 장 국 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정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4 장 정 부

제 1 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 관 국무회의

-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的基本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
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
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
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
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
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
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
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 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 4 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5 장 법 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7 장 선거관리

-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 8 장 지방자치

-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 장 경 제

-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 ·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2. 지방자치법령

- ✧ 지방자치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강(總綱)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인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제4조 삭제 <2011.10.14.> 제5조 삭제 <2011.10.14.>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전문개정 2011.10.14.]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11.1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채}) \div \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삭제 〈2008.10.8.〉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8.13.>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8.13.]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5.6.4.] 제4조	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18조 삭제 <2011.10.14.> 제19조(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본조신설 2009.4.1.]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22조(감사결과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湫)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 2 장 주 민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 · 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저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⑮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6〉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여야 한다. 〈17〉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19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간 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 3 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제 2 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 4 장 선 거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 장 지방의회 제 1 절 조 직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1.21.>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2 절 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 3 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원 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	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⑩ 그 밖에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절 권 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절 소집과 회기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5 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7.14.>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7.14.>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피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서 해임된다. 제 6 절 위원회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1.10.14.>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 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7 절 회 의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②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청 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의원의 사직 · 퇴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0 절 질 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1 절 징 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2 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 6 장 집행기관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1 관 지 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1.5.30.>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	제 4 장 집행기관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은 3기에 한한다.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 2 관 권 한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6.29.〉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13., 2012.6.29.〉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6.29., 2014.6.3.〉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8.13.〉 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3 관 지방의회의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2009.8.13.> ⑦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1. 인구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11.2., 2013.11.20.〉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 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11.2.>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011.5.30. 법률 제10739호에 의하여 2010.9.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함.]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 3 절 소 속 행 정 기 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 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 절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21조(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7 장 재 무 제 1 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 · 확장 · 이전 ·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제 5 장 재 무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 · 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 선임방법 ·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 2 절 예산과 결산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 3 절 수입과 지출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 절 재 산 및 공 공 시 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 절 보 칙 제145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8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양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전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2 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4.11.1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11.7.14.〉 제 9 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 ·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제 7 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4.]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한다. 제107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제처차장,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8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14.11.19.〉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제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제113조 삭제 〈2010.10.13.〉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 10 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11.5.30.〉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173조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2.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계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 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전문개정 2012.6.29.]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0.8.]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34〉부터 〈418〉까지 생략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 삭제 <1994.12.20.>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③ 삭제 <1994.12.2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7·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제목개정 2011.5.30.]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12.31.>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418>까지 생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335호, 2014.1.2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4.1.7.>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개정 2009.5.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조 삭제 <2014.3.11.>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도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4.11.1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조에서 이동 <2009.5.29.>]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	관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4.3.1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 2 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제 2 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5.29.>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계획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역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문개정 2009.5.29.]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6조(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의2 삭제 <2014.1.7.> 제6조 삭제 <2014.1.7.>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제6조의2 삭제 <2014.3.11.>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8조(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③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9조(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지역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의 작성 및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2.4.10.,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10조 삭제 <2009.5.29.>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이하 같다)·군수(광역시·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 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7.> [전문개정 2009.4.22.]	<개정 2014.3.11.>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1.>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3.11.>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 3 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경제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 3 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5.29.>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 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화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 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의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전문개정 2009.5.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5.29.>]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5.29.>]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제18조의2 삭제 <2009.5.29.> 제18조의3 삭제 <2009.5.2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3조 삭제 <2009.4.22.> 제14조(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 의견을 기초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과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사업과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0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발전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증진·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7.]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 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7조 삭제 <2009.4.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4.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현황 6.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현황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현황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항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0.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 4 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5.29.> 제21조(지역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3조(조직)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4조(전문위원회)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지역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5조(자문위원)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여론의 수집) 지역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역발전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4.22.]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9.4.22.]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	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9.]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0조(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8조 삭제 <2014.1.7.>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무를 처리한다. 1.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3.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지역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비서관과 함께 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③ 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5.29.] 제31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역발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1.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3. 지역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5.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5의2. 제32조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그 밖에 지역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발전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31조의2 삭제 <2009.5.29.> 제32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서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발전이나 지역생활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이나 지역생활권의 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 5 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14.1.7.>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전을 위하여 발전협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발전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발전협회의는 발전협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발전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32조의2 삭제 <2014.3.11.> 제32조의3 삭제 <2014.3.11.> 제33조 삭제 <2009.5.29.> 제33조의2 삭제 <2009.5.29.> 제 5 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14.3.11.>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1조(회계의 관리·운영)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1.7.>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삭제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 2015.1.1.] 제34조제1항 제35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014.3.11.〉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2012.5.23., 2014.1.7., 2014.1.28., 2014.6.3.>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축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 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제38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8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시행일 : 2015.1.1.] 제38조제3항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삭제 <2014.3.11.> 9.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전문개정 2009.5.29.]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주체와 대상 - 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 삭제 <2014.3.11.> -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 2015.1.1.] 제39조제1항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전문개정 2009.5.29.]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시행일 : 2015.1.1.] 제40조제2항 제41조(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예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생활기반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 2016.1.1.] 제36조 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7.>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개정 2014.3.11.>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 2015.1.1.] 제43조제6항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5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의2(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44조제4항에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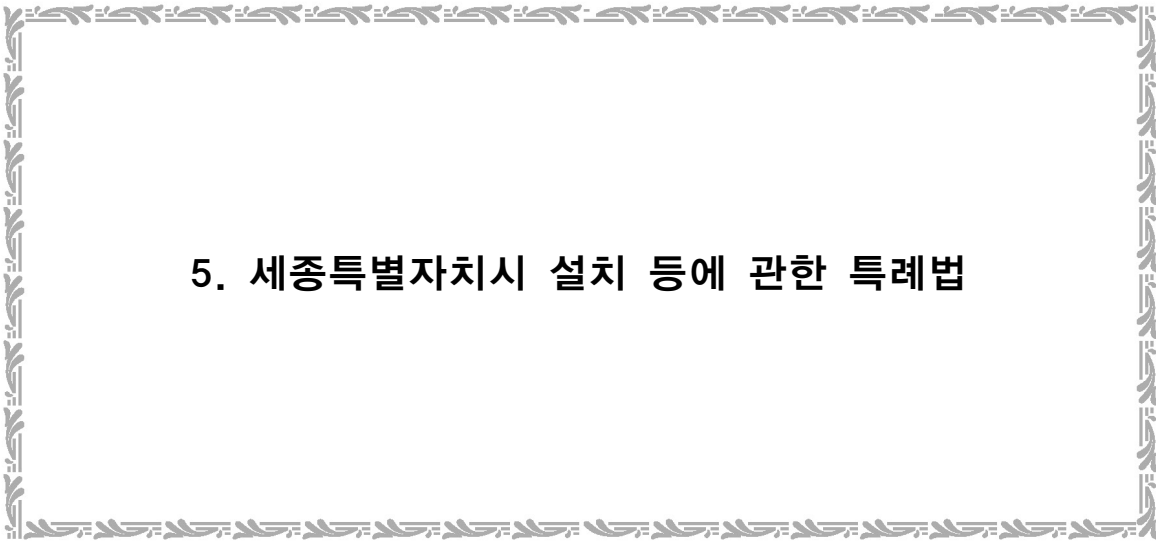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	[시행일 : 2015.1.1.] 제46조의2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4.22.]	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5.29.]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용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용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로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418>까지 생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동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
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
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
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 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 문곡리·금호리·동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 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 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 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 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
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회의의원 또는 시·
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
자치시의회의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

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
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
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
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
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
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
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
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
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
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와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다음 구역(이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동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갈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인구수×300원)으로 한다.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

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와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

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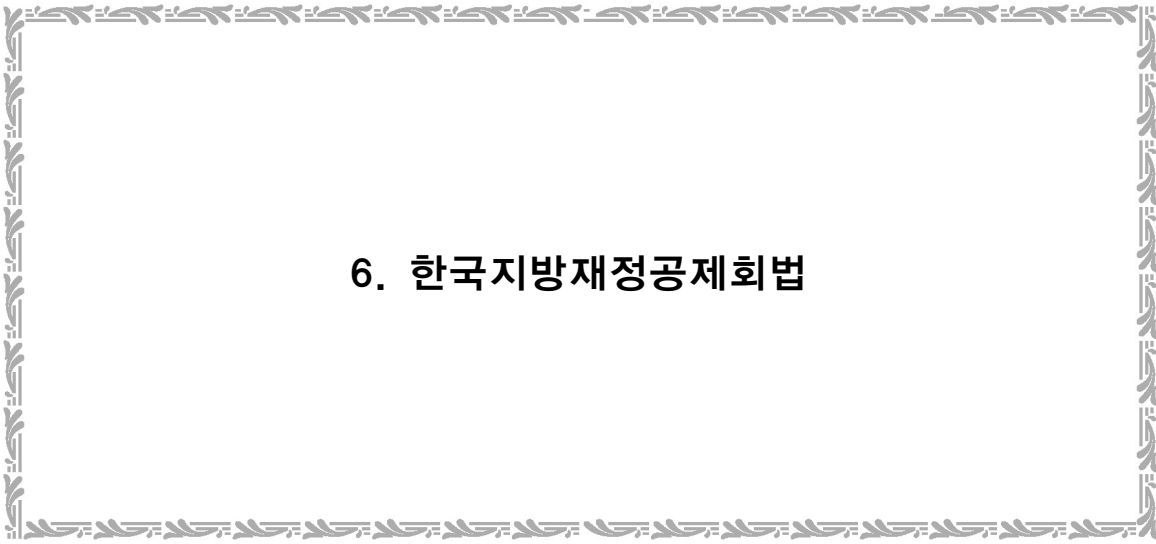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전문개정 2011.8.4.]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8.4.]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용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전문개정 2011.8.4.]

제22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1조에서 이동 <2011.3.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 세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 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10.10.] 제 2 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3.29.]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이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3.29.]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	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	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10.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제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0.10.>]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10.>]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13.6.21.>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게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0.10.>]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겹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3.29.>]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지원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3.29.]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한 자가 설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계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3.29.]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3.29.]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11.3.29.]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2011.10.10.>]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기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7조에서 이동 <2011.10.10.>]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흡수선 및 흡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10.10.>]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10.>] 제 4 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에서 이동 <2011.10.10.>]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 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 5 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 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 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 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 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에서 이동 <2011.10.10.>]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11.10.10.] [제12조에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6 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중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7.9.]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10.10.>] 제 7 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삭제]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개정 2013.6.21.>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다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0.10.>] 제 8 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10.10.>]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14.11.1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10.10.>]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10.10.>] 제 9 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10.10.>]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10.1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0 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10.10.〉]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10.10.>]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10.10.>]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1.10.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1 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1.10.10.>]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10.10.>]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6조는 제55조로 이동 <2011.10.10.>]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7조는 제43조로 이동 <2011.10.10.>]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에서 이동 <2011.10.10.>]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4조에서 이동 <2011.10.10.>]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5조에서 이동 <2011.10.10.>] 제 12 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6.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 13 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6조에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85〉부터 〈418〉까지 생략

地方財政關聯法令集

2014년 12월 印刷

2014년 12월 發行

발행처 : 韓國地方財政共濟會

인쇄처 : 나인애드

전 화 : 02) 2272-4156~7